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

2023. 10

[주요 변경사항]

항 목		'23년	'24년	비고
계획인원		600명 이상	(통합안) 500명 이상	규칙 개정 예정
협약기업		165개 이상	(통합안) 30개 이상	
지원금 지급 기준	인건비	연인원 또는 평균인원 기준 - 2명/ 4명/ 6명	(통합안) 산정기준 및 지원인원 변경 - 한시적 유예조치에 따라, 기준('23년)규칙 적용으로 변동사항 없음	
	일반운영비	평균인원당 18,000원 - 기본 5천만원/ 최대1억원	(통합안) 연인원 구간 - 기본 2천만원/ 최대1억원 - 자산맞 과정 1개당 2백만원 추가(최대 3천)	
	훈련단가 산정기준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 지원기준 - 컨소규칙과 상이	(통합안) 세부항목 및 지원기준 변경 - 컨소규칙과 동일	
수시과정		20%내외로 편성	20%이내 편성	훈련실적 및 집행률 제고
NCS경영·회계·사무 (중분류01~03)		전체 훈련과정수의 10% 이내로 승인	개설 불가	민간 공급 과다
중장년 ICT		기관별 의무 운영	폐지	정책방향 반영
채용예정자 과정 기준 취업률		해당과정(동일·유사) / 70%	기관 채용예정자 과정 / 60%	참여요건 완화
인자위 심사(1차)		사업계획서 각 5부 인쇄본 제출	사업계획서 각 1부 외 추가 인쇄본 불요	행정절차 간소화
공단 본부 심사(2차)		서면 + 인터뷰 심사	필요 시 인터뷰 심사 실시 - 조정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한함	본부 심사 간소화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제주RSC)의 “제주지역 기초 훈련공급 조사 및 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할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기대효과

- 지역과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제주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3 지원자격 및 역할

- 교육훈련기관은 기능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하며 훈련기관 형태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기 능	상호관계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역 내 주된 훈련공급	파트너훈련기관 선도	인프라지원금 및 훈련비용
파트너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협업하여 훈련공급	공동훈련센터와 협력	훈련비용

① 공동훈련센터

- 제주RSC의 인력양성계획을 토대로 세부 인력양성 실행
- 훈련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훈련수료생 채용 지원
- 파트너훈련기관 육성 및 지원

※ 아래 사유에 해당 시, 공동훈련센터 선정 불가

1. 정부지원금 유용, 기관 내부 갈등,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2.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24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파트너훈련기관 포함)
3. '24년도 신규 기관(기존 공동훈련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기관 미선정)

② 파트너훈련기관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신청 및 훈련실시(단독참여 불가)
- 훈련기관 평가 등급 최소기준은 1년 이상 인증받은 기관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하나, 복수의 공동훈련센터에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는 가능

4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기준

*세부기준은 [별첨 2] 참조

지원항목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프라	운영비	인건비	80%	
		일반운영비	100%	
	프로그램 개발비		1억	100%
	시설 및 장비비		15억	80%
훈련비		실비 심사		

※ 상기 지원기준은 한도와 비율을 설정한 것이며 예산액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 등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인 기관(대응투자금 면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항목별 지원기준

*세부기준은 [별첨 2] 참조

① 인건비 : 최근 2년간 훈련실적(수료 인원)을 평균하여 결정

· 훈련실적 산정기간 : 훈련종료일 기준 '21. 10. 01.~'23. 09. 30.

구분	수료인원(명)		
연인원	기본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평균훈련인원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지원인원	2명	4명	6명

※ 컨소시엄 유형통합에도 불구하고, 지산맞 과정은 2년간 한시적 유예조치로 기존 규칙에 따라 인건비(2억원 한도) 지원

· (참고) '23년 기존 규칙 : 기본지원 2명, 1인당 인건비 한도 5천만원(면제기관 4천만원)

구분	훈련 규모(명)				
연인원	기본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2,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평균훈련인원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6,200초과~9,600이하	9,600초과~
지원인원	2명	4명 한도	6명 한도	8명 한도~	9명~

② 일반운영비 : 훈련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 기준 내에서 지원

· 다만, 1개 과정당 2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최대 추가 한도는 3천만원임

(단위 : 천원)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계획인원	기본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3,499	3,500~3,999	4,000~
지원금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심사하므로 집행항목별 세부내역은 작성 불필요하며, 총액 내에서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③ 훈련시설비 : 기존 시설의 증축(별동 증축 포함), 개축, 리모델링,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등
- ④ 훈련장비비 : 훈련에 필요한 핵심 훈련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 비용, 훈련과정에 필요한 S/W 등
 - 고속련·신기술 및 지역특화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지원 인프라와의 중복여부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 전담자용 사무장비 지원은 '18년 선정기관 및 이전 선정된 기관 중 전담자 사무장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 대상으로 지원(8백만원 한도)
- ※ 전담자용 사무장비 지원 상세내용은 [별첨 2] 참조
- ⑤ 프로그램 개발비 :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개편, 교재·교보재 개발 등
 - 훈련프로그램 개발은 공동훈련센터 자체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 프로그램 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연도 또는 다음연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함

5

공동훈련센터 선정 방향

○ 제주지역·산업계 교육훈련수요 기반의 훈련과정 설계

- 계획 인원 : 공동훈련센터별 최소 훈련계획인원(연인원)은 정기 및 수시과정 포함하여 500명 이상 설정되어야 함
- 정기과정 : 훈련계획인원(연인원)의 80% 이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 훈련 운영 및 예산 운용이 필요함
- 수시과정 :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중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 편성 의무는 없음
- ※ 수시과정 유효기간 : '23년 수시과정은 '23. 12. 31일까지 유효하므로 '24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과정으로 편성
- 협약기업 : 최소 30개 이상, 관할 구역 내 협약기업의 비율 80% 이상

※ 훈련과정 설계 시 권고사항

- 계획 인원 : 유형통합에 따라 '23년 대비 최소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훈련실적 제고를 위해 '23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권고
- 협약기업 : 유형통합에 따라 '23년 대비 최소 협약기업 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원활한 과정 운영을 위해 '23년 협약기업 수 유지 권고

○ 우선 순위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

- 지역·산업계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산업·신기술, 반도체, 전략분야, 취약계층 특화과정, 정부 정책 연계과정 등 중점 선정

[우선순위 고려사항]

1. 해당 지역 과소공급 과정(훈련수요를 반영)
2.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지역 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과정
3. 취업률(채용예정자), 수료율, 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
4.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과정, 취약계층(중장년, 경단녀 등) 특화과정
5. IT·ICT서비스·SW개발, (정보)통신업, 콘텐츠·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 사업목적 및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훈련분야 제한”

- 경영·회계·사무(NCS 중분류 01~03) 과정은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인정 제외
- 공통법정의무교육 :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법정의무교육'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 타 사업 지원 과정 : 자격증 대비 과정 및 사업주훈련 등 타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인정 제외

○ 현장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

- 향상훈련 : 최소 훈련시간은 4시간이나, 훈련과정 내실화 및 훈련성과를 고려하여 심사 시 8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우선 고려
- 채용예정자 훈련 : 최소 및 최대 훈련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훈련수당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1개월 이상 운영 시 지급

○ 고품질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단가 추가 지원

- 일반과정 : 기준단가 100~150% 이내, 100% 과정은 훈련단가 심사 제외
- 지역특화 과정 : NCS 4수준 이상에 한해 100~200% 이내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 및 특화산업(<https://k-pass.kr>) 또는 지자체 지정 특화·위기 산업
 - 심사위원회에서 공동훈련센터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여부 확인 및 인정 여부 결정
- 고속련·신기술 과정 : NCS 5수준 이상에 한해 100~300% 이내
 - 신기술 분야는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출발TF의 24개 분야(**별첨 1**)에 해당되며, 심사위원회에서 훈련과정의 해당 여부 판단

○ NCS 적용 유연화

- 향상훈련 :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설계된 NCS 훈련기준을 적용 (능력단위 +50%까지 편성 가능)하는 등 훈련과정 자율성 확대
- 채용예정자 훈련 : 반드시 NCS 적용과정으로 편성

- NCS 적용 비율 : NCS기반 훈련기준이 총 훈련시간의 40%이상 편성 시 적용과정으로 인정
- NCS 형식 요건 : '능력단위' 편성
-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음
- 직업기초능력 훈련시간은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이고, NCS 적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 이내에서 NCS 적용시간 인정
(단, NCS 70% 미만 편성 시,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선정

- 최근 2개년 채용예정자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기관에 한해 승인

[취업률 산정 기준]

-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2021. 07. 01 ~ 2023. 06. 30.)간 기관 취업률의 산술평균
- 최근 2년 이내 채용예정자 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반영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 ↳ (1-1. 지산맞 훈련실적 有) 지산맞 채용예정자 전체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일 시 개설 가능
- ↳ (1-2. 지산맞 훈련실적 無) 기관의 채용예정자과정(내일배움카드제 등)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일 시 개설 가능

②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 ↳ 기관별 1개 과정(1회차, 600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분야 수요 및 향상 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
- 심사 시 채용약정서 제출은 생략하고, 실시신고 시 확인
 - 향후 실시신고 시 '채용약정서' 및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 첨부

○ **훈련비 쿼터 내에서 회차 및 정원 추가 가능**

- 회차 추가 : 승인받은 과정에 한하여 연간 3회차까지 추가 가능
 - 추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인자위 승인을 득하여 실시 가능
- 정원 추가 : 승인받은 회차별 정원의 120%까지 실시신고 가능
 - 지산맞 과정 훈련생으로만 추가 가능

○ **대면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훈련 활용**

- 대면 집체훈련 원칙 : 훈련성과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대면 집체훈련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원격대체 훈련 허용
- 쌍방향 훈련 대체 : 플랫폼(Zoom, Skype 등)을 활용한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훈련 대체 허용
 - 집체훈련의 훈련 품질 및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훈련생, 교·강사 관리 필요
 -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적용 가능 훈련과정 여부 등 공단 제주지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공고기간 : 2023. 10. 05.(목)~19.(목) / 15일간
- 접수마감 : 2023. 10. 19.(목) 18시까지(시간엄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및 방문 제출**
 - ①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일체를 공단 지사 및 제주RSC 담당자에 별도 송부
 - gift@hrdkorea.or.kr(김채린 주임 / 064-729-0735)
 - zuo0252@jejuhrd.or.kr(좌수정 주임연구원 / 070-4566-9774)
 - ② **방문 제출** : 사업계획서 A, B권 인쇄본 각 1부를 제주RSC 방문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내 제주RSC 사무국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1부 및 기관 대표자 포함된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계획서 A권, B권, 지원금 등 신청현황 및 기타 증빙자료(파일명 준수)

[제출서류 파일명]

1. 사업계획서 A권 : (한글) "01_2024_지역_신청기관명_초기 사업계획서(A권)"
2. 사업계획서 B권 : (한글) "02_2024_지역_신청기관명_초기 사업계획서(B권)"
3. 지원금 및 훈련비 신청 현황 : (엑셀) "03_2024_지역_신청기관명_지원금 및 훈련비 신청 현황"
4. 기타 증빙자료 : (한글) "04_2024_지역_신청기관명_기타 증빙자료"
 - (필수 첨부) 강사 자격 증빙서류, 협약기업 리스트
 - (해당 시) 시설·장비비 견적서

※ 사업계획서 파일명 변동 현황

"초기" 사업계획서 → 인자위 심사 완료 후 → "수정" 사업계획서
 → 공단 심사 완료 후 → "최종" 사업계획서

※ 훈련과정 일람표 사전 제출 안내

- 제출자료 : "(첨부3) 지원금 및 훈련비용 신청현황"의 2번 시트 "2.훈련과정 일람표"
- 제출기한 : 2023. 10. 13.(금) 18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zuo0252@jejuhrd.or.kr(좌수정 주임연구원 / 070-4566-9774)

7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 일시 : 2023. 10. 06.(금) 13:00~18:00
- 장소 : 각 공동훈련센터 회의실
 - ※ 센터별 방문일정 추후 안내 예정
- 대상 : 기존 공동훈련센터 관계자
- 내용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개요
 - 2023년 제주지역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결과 안내
 - 2024년 교육훈련기관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설명

8

심사 및 선정(예정)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선정 심사
 - 심사일시 : 2023. 10. 25.(수)~10. 27.(금)
 - 심사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심사대상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관계자
 - 심사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필요 시 현장평가 병행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산업 수요반영, 사업수행역량, 훈련과정의 적정성, 신청지원금의 적정성 적부 심사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훈련계획서 작성 및 제출관련 참고사항

- 훈련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과 그 외의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RSC 사무국으로 문의

주요업무	상세내용	일정
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	○ 제주RSC 홈페이지 등 게시 ※ 수요조사 결과는 사업설명회 시 제공 예정	10. 05.(목)~19.(목)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 수요·공급조사 결과 안내 ○ 참여자격, 심사방법, 지원예산 및 일정 안내	10. 06.(수) 13시~18시
↙		
접수마감	○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공단 지사, 제주RSC) ○ 사업계획서 A, B권 인쇄본 각 1부 제출(제주RSC) ※ 훈련과정 일람표 사전제출 : ~10. 13.(금) 18시	10. 19.(목) 18시
↙		
사업계획서 지역 심사(1차)	○ 훈련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하고, 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기관 선정·훈련계획 심사	10. 25.(수)~27.(금)
↙		
제주RSC 심의의결	○ 실무협의회 및 본위원회 회의 개최	11월 초 예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제출	○ 2024년도 제주지역 지산맞 사업계획서 제출	~11. 19.(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심사(2차) 및 심의위원회 확정	○ 예산 및 훈련물량의 적정성, 훈련과정별 기준 취업률 적합 여부 위주로 간소화 실시 ○ 서면 심사가 원칙이나, 확인 또는 조정 필요 시 별도 인터뷰(비대면) 심사 예정	11월 말~12월 예정
↙		
훈련 실시	○ 교육훈련기관·협약기업 간 협의를 통한 훈련생 선발	'24. 01. 01.~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 1

24개 신기술 분야 정의

연번	기술명	정의
1	AI	·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하나의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
2	클라우드	·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 서비스 개발환경, 응용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
3	IoT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
4	메타버스	·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5	5G·6G	· (5G)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으로(초저지연)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 · (6G)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지능을 바탕으로 XR콘텐츠, 완벽한 AI기술적용, 등 구현 가능
6	일반SW	·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 등을 의미
7	블록체인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8	빅데이터	· 데이터의 저장/추출/정제/분석에 기존의 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처리 속도를 갖는 상태를 의미
9	사이버보안	· 사이버 보안이란 사이버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기업·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10	이차전지	·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고, 방전되었을 때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
11	지능형로봇	·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 시스템 및 관련 기반기술을 개발 또는 생산
12	항공드론	·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 무인항공기와 연결하는 전자 장치 및 운용 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 활용하는 산업
13	3D프린팅	· 디지털 설계/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
14	첨단소재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초 물질, 또는 이를 활용하여 미래 소재의 수요 바탕으로 소재별 융·복합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는 기술
15	차세대 반도체	·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능을 포함하거나 성능과 소모 전력을 개선하여 고도화 분야(차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및 미래 신시장 분야(지능형로봇, 실감형콘텐츠 등) 등의 주요 기기의 부품이 되는 반도체
16	차세대 디스플레이	· 주요 응용기기들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 해상도, 화질, 소비 전력, 시인성 등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17	바이오헬스	· 생명공학 및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의료서비스)하는 산업
18	에코업	· 기후대응, 물관리, 자원순환관리, 환경지식정보감사 서비스, 환경안전보건, 대기관리, 환경복원 및 복구, 지속가능환경자원
19	신재생에너지	·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 또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20	수소	·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
21	양자	· 양자 고유의 특성(얽힘, 중첩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고속 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계측(양자센서)을 가능케 하는 기술
22	우주	·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또는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3	나노	·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100nm이하)에서 조작·분석하고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등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24	기타 신기술	· 위 23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기술

□ 인프라지원금 지원 한도

지원항목		지원한도	지원비율
운영비	인건비	4억	80%
	일반운영비		100%
프로그램 개발비		1억	100%
시설 및 장비비		15억	80%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인 기관(대응투자금 면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 (인건비) 최근 2년간 훈련실적(수료 인원)을 평균하여 결정

- 훈련실적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1. 10. 01.~'23. 09. 30.
-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선정된 해와 그 다음연도까지 훈련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결정
- 전담자 인건비 **1인당 지원한도액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구분	수료인원(명)		
	기본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연인원*			
평균훈련인원**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지원인원	2명	4명	6명

* 연인원 : 지산및 사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 인원

** 평균훈련인원 : 훈련인원을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 훈련시간)+(B과정 훈련수료인원×B과정 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하는 인원

※ **전담자 1인당 지원한도액이 5천만원인 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고) '23년 기존 규칙 : 기본지원 2명, 1인당 인건비 한도 5천만원(면제기관 4천만원)

구분	훈련 규모(명)				
연인원	기본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2,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평균훈련인원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6,200초과~9,600이하	9,600초과~
지원인원	2명	4명 한도	6명 한도	8명 한도~	9명~

- (일반운영비) 훈련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 기준내에서 지원
- 다만, 1개 과정당 2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최대 추가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단위 : 천원)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계획인원	기본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3,499	3,500~3,999	4,000~
지원금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집행항목 및 집행 기준 등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및 불인정 사례
임차비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 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 숙박비 지원 불가
회의수당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	- 50만원 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매식비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 1인 3만원 한도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자료인쇄비	①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인쇄비용	- 실비 인정
훈련생모집비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및 불인정 사례
회계정산비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교육훈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 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출장여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 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일반수용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 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 홍보용 물품은 1인 5만원 한도(훈련생 지급 불가)
사회보험료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수요조사비	지역인자위의 기초·심층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비(용역비 포함)	- 훈련과정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 훈련시설·장비비

○ 훈련시설비 세부기준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및 동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개축, 확장 및 동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훈련 전용 건축물일 경우,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 시설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 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 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포함 최대 지원 기간을 9년으로 할 수 있음) 	

○ **훈련장비비 세부기준**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 의자, 에어컨, 온풍기, 전자교탁 프로젝터, 스크린, 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및 훈련장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동 시스템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 및 동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 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훈련시설 장비 유지비 등**

- **(훈련시설·장비 유지비)** 훈련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지원단가 방식으로 지원받는 훈련과정운영비 시설·장비 관리유지비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자본적지출 :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비용
 수익적지출 :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유지를 위한 지출로 해당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

- **(훈련시설·장비 임차료)**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임차료, 리스료, LMS서비스임차, SW라이선스 임차 등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임차계약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 방식으로 지원받는 훈련과정운영비 시설·장비 관리유지비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전담자 사무장비 지원**

- **(노후장비 교체)** 기 지원받은 사무장비 중 내용연수 도래하지 않은 장비는 지원 불가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해당 장비가 고장·파손 등으로 인해 활용 불가한 경우만 교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7년차('18년도 신규선정) 및 전년도 지원대상 중 미신청 기관에 한하며, 연장기간 중 1회만 지원
- **(지원한도)** 공동훈련센터별 정부지원금 8백만원 한도, 대응투자기관의 경우 총 소요금액(100% 기준) 대비 20% 대응투자(현금) 필수

- (지원내용)

구 분	품 목(예시)	비 고
신청(지원) 가능	<p>[사무용 전산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데스크톱), 모니터 등 · 노트북, 복합기, 프린터 등 <p>[사무용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 · 사무용 책장 등 <p>[사무용 가전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스크톱, 모니터, 책상·의자 등 개인별 장비는 정부지원금(인프라지원금-인건비)을 받는 전담자 인원수만큼 신청(지원) 가능함 -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u>본체(데스크톱)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 제출함</u> · 행정사무용 노트북은 기관별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 -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u>본체(노트북)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 제출함</u> · 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공용품목은 품목당 기관별로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
신청(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 행정용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고사양 전산기기 등(게이밍용 PC 등) · 시설공사 등이 수반되는 장비 등(천장 매립식 에어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대비 고가이거나, 특수목적 등 행정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고사양 품목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범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제외)
<p>-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③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④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구분	집행항목(요건)	집행기준
전문가 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 1회 1인당 30만원이내 (내부전문가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 A4 1매당 4만원 한도 -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공동 훈련센터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 (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 실비 인정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프로그램개발 목적의 출장 및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별첨 3

공동훈련센터 훈련비용 지원기준

□ 훈련비용은 세부항목 및 지원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 (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훈련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 단위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120시간 미충족 시에는 훈련수당 지급 불가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지원규정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식비 또는 숙식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비는 1일 5천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천원(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원)까지 지원

※ 임금(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훈련참여기업에 직접 환급함

□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보조인력 활용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훈련회차 당 1명,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인건비 지원 가능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능한 렌탈 비용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 파트너훈련기관은 임차비 지원 불가

구분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 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 초과 불가) ※ 훈련기관이 신기술(4차 산업 중심)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여비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 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
다과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 1인당 1일 3천원한도
실습재료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실습재료 비용	- 실비지원
교재구입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 실비지원
기타 훈련비용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② 컨소시엄 사업 훈련과정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유지비, 단 인프라 지원금(시설·장비비) 항목에서 지원받는 유지보수비 관련 금액 제외	-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단,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000원 한도) - 피복비, 관리·유지비 등은 실비지원
훈련과정 일반 운영비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강사료	20만원(시간당) 한도	15만원(시간당) 한도	7만원(시간당) 한도	5만원(시간당) 한도
기타 사항	내부강사는 등급별 강사료의 1/2 이내로 지급, 컨소시엄사업 전담자에게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신기술 분야 외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0년(22년) 이상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0년(1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3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7년)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신기술 분야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7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신기술 분야는 훈련과정의 [별첨 1]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시간당 20만원 한도에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